

의안번호	2207441
의 퇴 인	최형두 의원
회 답 일	2025. 3. 20.
추 계 번호	25B0167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제공사업자의 데이터 제공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0억원(연평균 4억원)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데이터 제공 현황 실태조사 (안 제42조의2)	400	400	400	400	400	2,000	400

주: 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사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조사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2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42조의2(데이터 제공요구) 신설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제공사업자의 데이터 제공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제42조의2(데이터 제공요구) 신설	○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정보제공사업자의 데이터 제공 현황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(안 제42조의2제4항 신설)
 -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수, 매출액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(이하 “정보제공사업자”라 함)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, 요구를 받은 정보제공사업자에게 본인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아니면 해당 요구를 따를 의무를 부과하면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제공사업자의 데이터 제공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정보제공사업자의 데

이터 제공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유사 실태조사 사례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법 제34조의2¹⁾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고, 최근 3년간 매년 4~5억원²⁾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

[표 2]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

- (추진근거)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4조의2(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(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)
- (추진목적 및 주기)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매년 실시
- (조사대상) 부가통신사업을 신고, 등록하거나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사업자
 - － ‘23년 실태조사는 부가통신사업 신고 등 사업자 17,237개사 중 자본금 1억원 미만 사업자 등을 제외한 5,863개사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1,501개사 표본 조사
- (조사내용) 부가통신사업 현황 전반
 - －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 및 상호, 사무실 소재지 등 일반현황
 - － 자본금, 매출액, 영업이익 등 재무현황
 - － 종사자 수, 채용예정자 수 등 인력 현황 및 수요
 - － 제공서비스 내역(35개 유형), 서비스 이용자 수, 거래건 수, 거래액 등 부가통신서비스 제공현황
 - － 연구개발·보유기술 현황, 데이터 보호 및 이용 현황 등
 - － 기업 인수합병 현황 등 경쟁 현황
- (조사방법) 온라인 설문조사, 문헌조사 등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1)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4조의2(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,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) 인터넷 이용환경 고도화 사업(방송통신발전기금, 2032-302)의 내역사업으로 2023년 5억원, 2024년 4.5억원, 2025년 4억원 편성

-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제공사업자의 데이터 제공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0억원(연평균 4억원)으로 추계됨
 - 개정안은 정보제공사업자의 데이터 제공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주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, 유사사례인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와 유사한 방법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2] 정보제공사업자의 데이터 제공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관련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데이터 제공 현황 실태조사	400	400	400	400	400	2,000	400

주: 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사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조사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2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사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조사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assembly.go.kr